

선거시행세칙

[신한대학교 총학생회칙 세칙 제1호]

2018.10.19	제정	2019.02.28	전부개정
2023.08.31	일부개정	2024.09.06	일부개정
2025.09.08	일부개정	2025.12.19	일부개정

전 문

제1장 총칙.....	1~9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10~11
제3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2~27
제4장 전체선거관리위원회 연석회의.....	28~34
제5장 선거공고와 입후보 등록.....	35~41
제6장 선거운동.....	42~52
제7장 유세 및 선전.....	53~60
제8장 투표.....	61~72
제9장 참관인.....	73~76
제10장 개표	77~84
제11장 당선공고와 이의제기.....	85~86
제12장 선거부정.....	87~88
제13장 당선무효	89~90
제14장 재투표	91
제15장 보궐선거 및 재선거	92~93
제16장 투표의 종료.....	94
제17장 징계	95~96
제18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재정	97~102
제19장 유세선전물에 관한 규칙	103~11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신한대학교 [총학생회칙]에 따라 신한대학교 학생자치단체 선거가 고 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제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 ① 본 세칙은 다음 각 호에 적용한다.
 1. 총학생회장단 선거
 2. 단과대학 학생회장단 선거
 3. 동아리연합회장단 선거
- ② 학부(과)·전공 학생회장단 선거는 본 세칙을 준용할 수 있다.

제3조(선거시행원칙)

- ① 본회 모든 회원은 함께 만들어가는 학내 사회 건설을 위하여 노력한다.
- ② 선거는 보통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 및 평등선거의 원칙을 따른다.
- ③ 선거에 쓰이는 비용은 절감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④ 선거운동본부 간의 과도한 경쟁을 조절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⑤ 모두가 평등하고 납득할 수 있는 선거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학생회장단 및 단과대학 학생회장단, 동아리연합회장단 선거 를 관장하며 동시에 진행한다.

제4조(선거의 시기)

- ① 선거는 통상적으로 매년 11월에 시행하며, 의정부캠퍼스와 동두천캠퍼스 교내에서 진 행한다.
- ② 11월 선거 후 불출마 단위가 있을 시, 금년도에 보궐선거가 가능하다.
- ③ 제2조에 해당하지 않는 단위에 대한 선거 시기는 각 단위의 선거시행세칙을 따른다.

제5조(온라인 선거) 다음 각 항에 해당될 때 온라인 선거가 가능하다.

- ① 집단으로 모일 시,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위험이 있을 때
- ② 집단 집합 금지에 대한 정부 지침이 시행될 때
- ③ 비대면 수업(온라인 수업)이 2/3 이상 시행될 때
- ④ 그 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본회 의결기구에서 필요에 따라 온라인 선거를 진행 할 수 있다.

제6조(선거 준비 기간) 선거를 준비하기 위한 기간은 선거공고에 따라 연서 시작일로부터 하며 다음 각 항으로 구성한다.

- ① 선거공고
- ② 연서 기간

제7조(선거기간)

- ① 선거기간은 입후보 등록 마감일로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선거관리위원회의 해산일까지로 하며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1. 입후보의 등록 및 공고
 2. 유세 기간
 3. 투표 기간
 4. 당선공고

5. 이의제기 기간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선거관리위원회의 해산

② 본회는 입후보 등록 마감일의 7일 전까지 상세한 선거기간을 결정한다.

제8조(선거운동본부·후보자의 공정경쟁 의무) 후보자와 선거운동본부는 선거운동을 할 경우 본 세칙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경쟁하여야 하며, 정책이나 후보자의 의견을 지지·선전하거나 이를 비판·반대함에 있어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세칙 외 판단)

- ① 본 세칙에서 다루지 않는 사안에 관한 판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에 따른다.
- ② 본회의 위원은 제1항의 결정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10조(선거권과 선거인)

- ① 선거권을 가진 사람을 선거인이라 한다.
- ② 본회 모든 정회원은 총학생회장단 선거권을 갖는다.
- ③ 단과대학 학생회 모든 정회원은 해당 단과대학 학생회장단 선거권을 갖는다. 단, 다전공·부전공·복수전공의 경우 주전공에 속한 단과대학에만 투표권이 존재한다.
- ④ 동아리연합회 모든 정회원은 동아리연합회장단 선거권을 갖는다.
- ⑤ 총학생회칙 제27조 제2항에 의거하여 특수한 사정 및 교환학생의 경우, 성립 여부 판단 시, 정회원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피선거권과 피선거인) 후보자 등록 기간 중 선거권을 가진 회원에게는 피선거권이 주어져며, 피선거권이 주어진 사람을 피선거인이라 한다. 단, 총학생회장단의 피선거권에 관해서 본교 규정집의 임원 자격을 따른다.

제3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2조(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를 [총학생회칙]과 본 세칙에 따라 민주적이고 공정한 진행을 위하여 중앙운영위원회가 자격과 권한을 위임한 기구다.

제13조(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 ① 중앙운영위원회는 입후보 등록 마감일 7일 전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하여 공고한다.
-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단위에서 파견한 위원들로 구성하며, 각 단위는 최소 3인 이상 최대 5인을 파견해야 한다. 단, 제1호와 제2호는 구분하지 않고 본다.
 - 1. 총학생회장단
 - 2. 중앙집행위원회
 - 3. 각 단과대학 학생회
 - 4. 동아리연합회
- ③ 제2항의 각 단위에서 파견하려는 자는 소속 단과대학 학생회 또는 동아리연합회의 의결기구를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 파견에 관한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④ 각 단과대학 학생회 및 동아리연합회 대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의 구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거의 제반 업무를 집행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집행부를 둘 수 있다.

제14조(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임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임기는 구성 이후부터 해당 선거의 종료일까지 한다.

제15조(중앙선거관리위원장)

- 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총학생회장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회의의 소집 권한을 가지며 회의를 주재한다.
- ③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궐위 시 부총학생회장이 인준받는다. 단, 부총학생회장 또한 궐위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4시간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선출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는 재적인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2/3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중앙선거관리위원의 의무)

- ① 중앙선거관리위원은 책임 있는 자세로 선거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제17조를 성실히 임해야 한다.
- ② 중앙선거관리위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또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중앙선거관리위원은 이 회와 이 회 산하기구, 특별 기구에 치러지는 각종 선거의 피선거권이 없으며, 선거운동, 선거운동본부 가입, 추천인 서명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또한, 사임 이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④ 중앙선거관리위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재원인 총학생회비의 사용을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사용하며, 이에 대한 모든 결산을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7조(중앙선거관리위원의 역할)

- ① 선거의 진행을 총괄한다.
- ② 선거인들에게 각종 선거와 관련한 사항을 홍보하여야 한다.
- ③ 선거에 필요한 물품과 자료집을 제작하고 부착·배부하여야 한다.
- ④ 선거운동본부의 합동유세와 정책토론회, 공청회를 기획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 ⑤ 투표와 개표 관련 실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 ⑥ 특정 선거운동본부 및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선거 문화를 해치는 행위를 제재할 수 있다.
-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 1. 선거운동본부 및 후보자의 자격 박탈
 - 2. 재선거
 - 3. 선거 일정의 조정
 - 4. 당선무효
 - 5. 그 밖의 위 사항에 준하는 중요한 사항

제18조(중앙선거관리위원의 피선거권) 중앙선거관리위원은 피선거권이 없다.

제19조(중앙선거관리위원의 권한) 중앙선거관리위원은 공정한 선거 문화를 위하여 각 선거운동본부에 경고 조치할 권한이 있다. 단, 경고 조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3 이상의 인준하에 부여된다.

제20조(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립 의무)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에 어떤 형태로든 참여가 불가능하다.

제21조(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서는 선거의 진행과 후보자의 이의제기 및 그 밖에 선거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서는 본 세칙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선거와 관련한 사항의 수치, 수량, 및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소집에 따라 재적 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는 출석 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 의장의 결정에 따른다.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는 회의 간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제22조(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행부)

① 중앙선거관리위원 집행부 구성은 중앙운영위원회 인준을 받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구성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도와 선거의 제반 업무를 집행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행부는 제16조에 해당하는 의무를 갖는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행부는 제17조 제2항, 제3항, 제4항에 해당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행부는 제17조 제5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하고는 업무를 보조할 수 있다.

1. 봉인이 되지 않은 투표함에 접촉하는 행위

2. 투표용지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인을 찍는 행위

제23조(지역선거관리위원회)

① 지역선거관리위원회는 각 단과대학을 기준으로 설치하며, 해당 지역의 선거 관리를 담당한다.

② 지역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각 단과대학의 의결기구에서 선출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할 수 있다.

③ 지역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의무에 관하여서는 제16조를 준용한다. 또한, 지역선거관리위원은 사임하면 본회와 본회 산하기구 선거의 후보 등록, 선거운동, 선거운동본부 가입을 할 수 없다.

④ 지역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해임에 관하여서는 제25조를 준용한다.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선거관리위원회를 관리·감독하며, [총학생회칙] 및 [선거시행세칙] 등에 어긋나거나 부당한 결정·집행사항이 있으면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⑥ 온라인 선거로 진행될 시 지역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유동적으로 구성한다.

제24조(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캠퍼스 내에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을 배정한다.

제25조(중앙선거관리위원의 해임)

① 중앙선거관리위원은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해임한다.

-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해임요구서는 해임 요구에 대한 이유를 명시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해임 요구를 할 수 있는 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 각 선거운동본부장에 한정한다.
-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해임요구서가 접수되면 위원장은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 심의·의결한다.
-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해임은 재적 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해임요구서 양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것으로 한다.

제26조(중앙선거관리위원의 징계)

- ① 중앙선거관리위원은 제16조, 제20조에 위반했을 경우, 본 회칙 제132조 제1호, 제5호에 해당하는 사안이므로 본 회칙 제131조에 따라 징계를 집행한다.

제27조(중앙선거관리위원의 추가 임명)

- ① 중앙선거관리위원은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면 사임할 수 없다.
- ② 중앙선거관리위원의 사임요구서는 사임에 대한 이유를 명시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사임요구서의 수리 여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③ 중앙선거관리위원이 사임할 때 또는 해임될 때 제13조의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중앙선거관리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새로운 중앙선거관리위원의 임명은 재적 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 ④ 중앙선거관리위원의 사임·해임 또는 추가 임명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변경 사항이 있으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 ⑤ 사임요구서 양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것으로 한다.

제4장 전체선거관리위원회 연석회의

제28조(전체선거관리위원회 연석회의의 지위) 전체선거관리위원 연석회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지역선거관리위원회는 총학생회장단 및 단과대학 학생회장단, 동아리연합회장단 선거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회의체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 지역선거관리위원회는 전체선거관리위원회 연석회의를 결정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29조(전체선거관리위원회 연석회의의 구성) 전체선거관리위원회 연석회의의 구성은 중앙선거관리위원 및 각 지역선거관리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행부로 한다. 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행부는 발언권 및 결정권이 제한된다.

제30조(전체선거관리위원회 연석회의의 운영)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 지역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이 완료된 후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및 각 지역선거관리위원장을 포함한 재적 위원 과반의 출석으로 개최된다.

제31조(전체선거관리위원회 연석회의의 역할)

- ① 본 세칙의 유효성에 관한 검토와 삭제, 추가되어야 할 부분을 조율할 수 있다.
- ② 총학생회장단 및 단과대학 학생회장단, 동아리연합회장단 선거에 전반적으로 제기된 문제를 논의하여야 한다.
- ③ 투표용지, 기표 용구, 기표대, 투표함의 형태 및 투표 방법을 공유하고 확정한다.

제32조(전체선거관리위원회 연석회의의 결과 기속) 전체선거관리위원회 연석회의 결과는 본회에 속한 모든 학생자치단체의 선거를 기속한다.

제33조(출석요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원활한 선거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회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1. 각 단위의 후보자
2. 각 선거운동본부의 본부장
3. 선거운동본부에 대한 징계 사유와 관련된 자

제34조(선거운동본부장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각 선거운동본부와의 협의를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선거운동본부의 본부장이 참석하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5장 선거공고와 입후보 등록

제35조(선거인 명부)

-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개시 72시간 이내로 선거인 명부를 확정하여야 한다.
- ② 선거인 명부에는 선거인의 성명, 성별, 소속, 학번, 교환학생 여부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③ 선거공고 후 휴학, 자퇴, 그 밖에 선거인의 신상이 변동되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수정하여야 한다.

제36조(선거공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일정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입후보 등록 마감일 7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37조(선거운동본부 명칭)

- ① 선거운동본부의 명칭은 수식 기호 및 일반적인 특수문자의 사용을 허용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호는 사용을 금지한다.
 1. 도형 문자
 2. 그림 문자 및 이모지 형태의 기호
 3. 그 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성과 중립성을 저해한다고 판단하는 문자
- ② 선거운동본부의 명칭은 특정 기구를 비방하는 문구사용은 금지한다.
- ③ 각 선거운동본부 명칭의 중복을 금지한다.

제38조(선거운동본부 색상)

- ① 선거운동본부는 본부를 상징할 수 있는 고유 색상을 지정하여야 하며, 해당 색상은 선거기간 동안 일관되게 사용하여야 한다.
- ② 선거운동본부의 색상은 단색 또는 그라데이션 사용이 가능하다. 지정 색상은 단색뿐만 아니라 동일 계열의 색상으로 구성된 그라데이션도 허용한다.
- ③ 각 단위 내 선거운동본부의 색상은 중복을 허용하지 아니하되, 다른 단위와의 중복은 이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39조(선거운동본부 사무실)

- ① 입후보 등록을 한 선거운동본부는 사무실을 본교 내에 한 개 이하로 배정한다.
- ② 선거의 공정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는 선거운동본부 방으로 사용할 수 없다.
 1. 학생자치단체 사무실 및 회의실
 2. 신문방송센터 및 언론기구 사무실

3. 본교 홍보대사 사무실

- ③ 그 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사무실을 배정받을 수 있다.

제40조(입후보 등록)

① 피선거권을 가진 회원 중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등록의 마감 시간까지 공고한 제출 양식과 방법을 준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

② 온라인 선거 진행 시, 추천인 서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하는 방식에 따라 이루어진다. 단, 제5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해당하며 제5조 제4항의 경우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단 제5호에 포함되지 아니한 공약은 제6호에 사용할 수 없다.

1. 정부 후보 입후보 등록 원서 각 1매

2. 본회 회원의 추천인 서명서(추천인 서명서의 최소 인원은 각 단위별 재학생 수의 15% 이상으로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 단위별 재학생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해당 인원수를 명확히 고지하여야 한다.)

가. 총학생회장단: 총 재학생 수의 15% 이상

나. 단과대학 학생회장단: 총 단과대학 재학생 수의 15% 이상

다. 단일학과 단과대학 학생회장단: 총 학과 재학생 수의 15% 이상

라. 동아리연합회장단: 총 동아리연합회 소속 재학생 수의 15% 이상

3. 정부 후보 재학 증명서 각 1매

4. 성명·학번·직무정지여부를 포함한 선거운동본부원 명부

5. PDF 형식의 정책자료집 파일

6. [유세 선전물에 관한 규칙]에 부합하는 PDF 형식의 선거운동본부 유세 선전물 파일

7. 후보자 서약서

④ 출마 형태는 '정 후보 1인과 부 후보 1인'의 형태로 한다.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40조에 준수하여 후보자 등록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41조(사전검토)

① 사전검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필요에 따라 진행할 수 있다.

② 사전검토 과정에서 발견된 사항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본부에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다.

③ 사전검토는 후보자의 원활한 입후보 등록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적 절차일 뿐이며, 사전검토에서 발견되지 않은 사안에 대한 책임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있지 않다.

제42조(입후보 등록 서류 심사)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41조에 따른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 서류의 미흡 또는 미비 정도에 따라 주의, 경고, 탈락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주의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판단하기에 경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서류 미흡 사항은 주의를 부여할 수 있다.

2. 주의를 입후보 등록 서류 심사 과정에서만 효력을 가지며, 심사 종료 후에는 누적되지 않는다.

- ③ 경고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판단하기에 주의보다 중대한 서류 미흡 사항은 경고를 부여할 수 있다.
 2. 경고는 심사 종료 이후에도 누적하여 적용된다.
 3. 주의 2회는 경고 1회로 간주한다.
- ④ 탈락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판단하기에 주의 또는 경고의 범위를 넘어서는 중대한 서류 미비·위반 사항은 탈락을 부여할 수 있다.
 2. 경고 3회는 탈락으로 처리한다.
-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 등록 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진위 여부를 필수적으로 검증해야 하며, 허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선거운동본부는 탈락 또는 징계를 받을 수 있다.
- ⑥ 본 조항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하에 처리한다.

제6조 선거운동

제43조(선거운동의 정의)

- ① 선거운동은 선거에 임하여 특정 선거운동본부를 당선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단,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 및 의사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② 본회 회원은 선거운동본부에 참여하여 선거운동본부원으로서 이 세칙에서 제한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제44조(선거운동의 구성)

- ① 총학생회장단 및 단과대학 학생회장단, 동아리연합회장단의 선거운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1. 선거운동본부, 후보자의 개인 유세
 2. 선거운동본부, 후보자의 강의실 유세
 3. 선거운동본부, 후보자의 합동유세
 4. 선거운동본부, 후보자의 정책토론회
 5. 선거운동본부, 후보자의 정책 및 공약 선전
 6. 선거운동본부, 후보자의 공청회
 7. 선거운동본부, 후보자의 온라인 선거운동
 8. 그 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동으로 제시하는 유세 형태

제45조(선거운동 기간과 공간)

- ① 선거운동의 기간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구별하며, 입후보 확정 공고일 이후부터 각 호에 명시되어 있는 일시로 한다.
 1. 온라인: 입후보 확정 공고일로부터 투표일 전일
 2. 오프라인: 입후보 확정 공고일로부터 투표일 전주 평일
- ② 선거운동의 시간에 대한 제한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 ③ 선거운동은 의정부캠퍼스와 동두천캠퍼스 학내에서만 가능하다.

- ④ 선거운동본부가 선거운동의 기간 또는 공간을 어길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안의 의도성을 판단하고, 경고 조치할 수 있다.

제46조(추천인 서명)

- ① 입후보를 준비하는 자는 제41조 제2항 및 제3항 제2호에 의거하여 유권자로부터 추천인 서명을 받아야 한다.
- ② 입후보를 준비하는 자는 추천인 서명 시 해당 선거와 정책의 기본방향에 한정하여 설명할 수 있다.
- ③ 입후보를 준비하는 자는 추천인 서명 시 선거운동본부의 착용과 유세 등의 모든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 ④ 모든 추천인 서명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명의의 인증 표식이 있어야 한다.
- ⑤ 추천인 서명서의 추천인은 각 선거운동본부 당 1회의 추천만 가능하다.
- ⑥ 총학생회장단 및 단과대학 학생회장단, 동아리연합회장단 선거의 추천인 서명은 중복이 가능하다. 또한 동일한 단위 내에서의 중복도 가능하다.

제47조(선거운동본부원)

- ① 선거운동본부원은 선거운동본부에 소속한 사람으로서 세칙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선거운동을 하여야 한다.
- ② 선거운동본부원은 본회 회원에 속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입후보 등록 시 제출한 선거운동본부원 명부에 등록된 사람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③ 본회 준회원이 선거운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각 선거운동본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휴학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선거운동본부원 등록 기간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48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선거관리위원회
 -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행부와 지역선거관리위원회 집행부
 - 3. 학생 임원 장학, 학생기자 장학, 본교 홍보대사 장학 수혜자
 - 4. 중앙운영위원회 산하 상설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 5. 전 동아리별 회장
 - 6. 학과 학년 대표
 - 7. 그 외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표성 및 영향력을 인정하는 학생
- ② 선거권을 갖지 않은 사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나, 준회원은 예외로 한다.

제49조(선거운동을 위한 직무정지)

- ① 제48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선거운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지위의 직무를 정지하여야 한다.
-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 등록 시 직무정지에 관한 서류 양식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③ 당사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직무정지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직무정지에 관한 서류 수령 후 24시간 이내에 당사자에게 수리 여부를 통보하여야 하며, 양식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작성한 서류는 수리하지 아니한다.
- ⑤ 직무를 정지한 사람은 절차를 준수하여 선거운동본부원으로 등록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⑥ 직무정지에 관한 서류 수리 기간과 선거운동본부원 등록 기간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⑦ 직무정지는 당선공고 이후 즉시 해제된다.

제50조(학생회 및 언론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사람은 특정 후보자나 선거운동본부에 대한 지지나 비방을 할 수 없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선거관리위원회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행부와 지역선거관리위원회 집행부
3. 학생 임원 장학, 학생기자 장학, 본교 홍보대사 장학 수혜자
4. 중앙운영위원회 산하 상설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5. 선거운동을 대가로 부정청탁을 받은 자
6. 전 동아리별 회장
7. 학과 학년 대표
8. 그 외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표성 및 영향력을 인정하는 학생

② 선거운동본부는 제1항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사람의 선거운동을 발견할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이의제기를 받은 단체 또는 사람은 이의에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사안에 대해 공정하게 심의한다.

④ 심의 결과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맞을 경우, 후보자 및 선거운동본부는 제96조 제1항에 해당하며, 그 외의 본회의 회원일 경우, 본칙 제132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제51조(선거비용의 제한과 공개)

① 모든 선거운동본부의 선거 비용은 당해 연도의 총학생회비 중 최대 2% 이내로 제한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모든 선거운동본부에 최대 10만 원의 선거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선거지원금을 포함한 모든 선거운동본부의 선거비용 사용처는 제54조의 유세 선전물로 한정한다.

③ 모든 선거운동본부는 선거비용의 결산을 증빙자료로 첨부해 투표 전날 09시부터 투표 마감일 자정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오프라인 장소와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 제3항에 대해 위반한 선거운동본부에 경고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선거운동본부는 선거운동 기간 중 과도한 경비 지출 및 선거 과열 경쟁 방지를 위해 구성 간의 별도 단합성 행위 및 소비성 지출을 자제한다.

제52조(설문조사와 서명운동)

① 선거운동본부는 선거운동 기간 중 설문조사나 서명운동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설문조사와 서명운동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한다.

제53조(그 밖의 사항) 이외 선거운동과 관련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제7장 유세 및 선전

제54조(유세) 유세는 개인 유세, 강의실 유세, 합동유세로 이루어지며 입후보 확정 공고일 06시부터 투표 전날 18시까지 할 수 있다. 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방법이 제한될 수 있다.

제55조(유세 선전물)

- ① 유세 선전물은 포스터, 현수막, 리플릿, 입간판, 선거운동본부띠로 한정한다.
- ② 유세 선전물에 대한 규격과 부착 및 설치 장소 등은 [선거시행세칙] 제19장을 따르며, 각 선거운동본부는 이에 따른 유세 선전물을 제작하여야 한다.
- ③ 기타 선전물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에 따른다.

제56조(정책자료집)

- ① 각 선거운동본부별 정책자료집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마감시한까지 제출한다.
- ② 각 선거운동본부는 정책자료집에 명시한 해당 선거운동본부의 정책만을 정책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 단, 표현의 미세한 차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따른다.
-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책자료집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지정한 장소에 정해진 부수로 배치하여야 한다.

제57조(온라인 선거 유세) 인터넷과 휴대폰 그 밖의 온라인을 통한 선거 유세의 경우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각 선거운동본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온라인 사이트에서 선거 유세를 할 수 있다.
2. 온라인 사이트의 내용은 본회 회원의 의견 개진과 후보자의 정보, 정책자료집, 선거운동본부의 의견 및 홍보 등으로 구성한다.
3. 기타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58조(언론을 통한 선거 유세) 언론을 통한 선거 유세는 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9조(합동유세, 정책토론회 및 공청회)

- ① 합동유세, 정책토론회 및 공청회는 다음 각 호로 구성되며, 세부적인 일정과 장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단, 급작스러운 우천 시 또는 이의가 있을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일정과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1. 의정부캠퍼스 1차 합동유세
 2. 동두천캠퍼스 1차 합동유세
 3. 의정부캠퍼스 정책토론회
 4. 의정부캠퍼스 2차 합동유세 및 공청회
 5. 동두천캠퍼스 2차 합동유세 및 공청회
- ② 단일후보일 경우, 제1항 중 공청회만 진행한다.
- ③ 합동유세 순서는 입후보 등록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추첨하여 결정한다.
- ④ 각 선거운동본부의 후보자들은 유세 시간 중 발언을 할 수 있다. 단, 합동유세의 시작 10분 전까지 후보자가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후보자가 발언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본부 후보자의 합동유세의 시간을 정할 수 있다. 단, 한 선거운동본부의 유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 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본부별 유세 시간이 20분을 초과할 시 경고 조치할 수 있다.
- ⑦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책토론회 및 공청회의 실시를 결정한다.
- ⑧ 각 후보자 및 선거운동본부는 합동유세나 정책토론회, 공청회 간 타 후보에 대한 인격적인 비방이나 근거 없는 비판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⑨ 단과대학 학생회장단 선거의 경우, 단과대학 내 학과가 소속된 캠퍼스에서만 진행한다.
- ⑩ 후보자의 판단에 따라 제1항의 유세 및 선거 일정을 포기할 수 있다.

제60조(합동유세 중 유세 금지)

- ① 합동유세 기간 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유세장을 제외한 모든 장소에서의 선거 유세를 전면 금한다.
- ② 각 선거운동본부는 자신의 유세 기간에만 유세장에 리플릿을 배포할 수 있다. 단, 합동유세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각 선거운동본부는 유세 기간에만 유세장에 리플릿을 배포할 수 있다.
-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른 선거운동본부의 유세 시간에 선전물 배포, 깃발 흔들기, 구호 외치기 및 그 밖의 선거운동을 하는 선거운동본부에게 경고 조치할 수 있다.

제61조(허위사실 유포와 기재에 대한 제재 조치)

- ① 허위사실 유포와 기재에 대한 제재 조치는 다음 각 호로 구성된다.
 - 1. 선거운동본부가 선전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 2.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본부원이 강의실 유세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 ② 제1호의 경우, 선거운동본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일시까지 문제가 된 부분을 전량 교체 또는 수정하여야 한다.
-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허위사실 기재와 유포, 사후 대응에 대해 경고 조치할 수 있다. 또한 제2호의 경우, 해당 선거운동본부의 후보자는 다음날 08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진행하는 강의실 유세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온라인 사이트에서 정정 발언·사과 발언하여야 한다.

제8장 투표

제62조(투표 절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의 상세한 절차를 투표 시행일 7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63조(투표구의 지정)

-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절차의 상세한 안내를 위해 투표구를 지정한다.
- ② 투표구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 1. 의정부캠퍼스 투표구
 - 2. 동두천캠퍼스 투표구
-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구의 구분을 확정하고 투표 시행일 7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64조(투표 기간) 중앙운영위원회는 선거기간 중 3일을 투표 기간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65조(투표 기간의 연장)

- ① 전체 투표율이 40%를 넘지 않았을 경우에 연장 투표를 실시한다.
- ② 투표 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투표율이 정회원 40%를 넘지 않을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투표 기간을 공휴일 제외 최장 2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제66조(투표시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기간에 한하여 투표시간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67조(투표소의 설치)

-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정한 투표구마다 투표소를 한 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소의 설치 장소를 확정하고 투표 시행일 7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 ③ 투표소의 입구와 출구는 투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한다. 단,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출입이 가능하다.
 - 1. 해당 투표소의 중앙선거관리위원
 - 2. 해당 투표소의 지역선거관리위원
 - 3. 해당 투표소의 참관인
 - 4. 장애학생과 동행한 도우미
- ④ 각 투표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과 지역선거관리위원 각 1인 이상이 상주하여야 한다.
- ⑤ 참관인은 해당 투표소에 상주할 수 있으며, 참관인이 상주하지 않았을 시 해당 선거운동본부는 투표 전반에 관련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제68조(투표소의 운영시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소 운영시간을 결정해 공고하여야 한다.

제69조(투표소의 선전물) 투표소에는 투표 절차와 유의 사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허용한 포스터만을 부착할 수 있다.

제70조(투표자의 확인)

-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자의 확인 방식을 투표의 절차와 함께 투표 시행일 7일 전에 공고한다.
- ② 특정 선거운동본부의 선거운동본부원 또는 선거운동본부원의 요청에 의하여 타인이 이중 투표나 대리 투표를 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철저히 조사하여 본회 회원에게 공개하고 결과에 따라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경고 조치하거나 후보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제71조(투표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소에 각 선거별 투표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72조(투표함의 봉인과 보관)

- ① 투표 시간 종료 후, 선거운동본부별 참관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은 투표함에 서명을 마친 후에 봉인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참관인 부재 시, 투표 종료 10분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의 서명 후 참관인의 서명 없이 투표함을 봉인할 수 있다.
-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 선거운동본부의 참관인과 동행하여 봉인한 중앙 투표소의 투표함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로 옮긴다. 단, 개표일에 한하여 각 선거의 개표장으로 옮긴다.
-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미사용 투표용지를 별도로 수거하여 봉인하여야 한다.
-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함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 옮긴 후부터 투표소로

옮기기 전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의 관리하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73조(후보자의 투표소 접근 제한) 후보자는 투표를 제외한 경우 투표소에 접근을 할 수 없다.

제9장 참관인

제74조(참관인의 자격)

- ① 각 선거운동본부는 투표소당 1인의 선거운동본부원을 참관인으로 배치할 수 있다.
-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투표소에 배치를 신고한 선거운동본부원 1인의 성명과 선거운동본부명을 적은 명찰을 제작하여 참관인에게 배부한다. 이 경우 참관인은 이를 부착한 상태에서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동일 선거운동본부 내의 다른 선거운동본부원은 명찰을 인계받아 참관인의 역할을 대신 수행할 수 있다.
- ③ 각 선거운동본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협의한 기한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소 당 참관인 명단과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모든 참관인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재학 증명서
 2. 학생증
 3. 그 밖의 학적 상태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

제75조(참관인의 역할)

- ① 참관인은 투표가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감독 후 참관하여야 한다.
- ② 참관인은 투표소 운영 시작과 종료 30분 전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과 함께 투표함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투표소로, 투표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로 운반하여야 한다.

제76조(참관인의 제한)

- ① 참관인은 투표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선거 유세 및 독려 행위
 2. 투표를 방해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
 3. 특정 후보를 지지 또는 비난하거나 선거 선전물을 소지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② 중앙선거관리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참관인에게 즉시 제재를 가하고, 해당 참관인의 행위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한다.
-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의 사항을 논의하여 해당 참관인에게 퇴장을 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퇴장을 조치 받은 참관인은 즉시 퇴장하여야 하며 참관인 자격이 박탈된다. 단, 참관인 자격 박탈은 해당 선거 종료 시 해체된다.
- ④ 제1항을 위반한 사안이 중대한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선거운동본부의 논의 하에 후보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제77조(참관인의 이의제기)

- ① 참관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진행 상황에 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참관인이 투표 진행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은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투표를 일시 중단할 수 있다. 단, 한 시간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유권해석을 하고 투표를 재개한다.

- ③ 참관인이 해당 투표소에 불참한 선거운동본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타 선거운동본부의 참관인 각 합의 사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0장 개표

제78조(개표 시작과 순서)

- ① 투표가 종료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감독과 각 선거운동본부장의 입회하에 선거인 명부를 통해 투표와 관련된 사항을 확인한다. 단, 비밀투표에 저촉되는 사항은 확인하지 아니한다.
- ② 투표 종료 시각 이후 당일 개표를 시작한다.
- ③ 총선거의 단위별 개표 순서는 단과대학 학생회장단 선거, 동아리연합회장단 선거, 총학생회장단 선거로 하며, 모든 선거의 개표 종료 시점은 투표율 집계 및 이의신청 수리까지의 과정으로 한다.

제79조(무효투표)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 1. 해당 투표구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 2. 해당 투표구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도장이 없는 것
- ② 이 외의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에 따른다.

제80조(유효투표)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유효로 한다.
 - 1. 어느 란에 기표한 지 투표자의 의사가 명확히 확인되는 것
 - 2. 한 후보의 란에 두 개 이상 기표하거나 겹치게 기표한 것
- ② 이 외의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에 따른다.

제81조(기권표)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기권표로 하며 유효로 한다.
 - 1. 어느 란에도 기표하지 아니한 것
 - 2. 두 군데 이상의 란에 기표한 것
 - 3. 어느 란에 기표한 지 투표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것
- ② 이 외의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에 따른다.

제82조(개표일과 개표 장소)

- ① 개표일은 투표 종료 당일 개표를 원칙으로 한다. 단, 그날 개표가 불가능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를 24시간 이내에 공고해야 한다.
- ② 개표 장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83조(오차와 오차율)

- ① 오차는 투표용지 교부 수와 개표 완료 후 실제 투표자 수의 차(절댓값)의 합과 이중투표와 대리투표로 확인된 수의 총합이다.
- ② 오차율은 (오차/전체 선거인 수)*100(%)이다.

제84조(결선투표)

- ① 개표 결과, 득표수 1, 2위인 선거운동본부 간 표 차보다 오차가 클 때, 해당 두 선거운동본부 간의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 ② 결선투표는 개표 후 7일 이내에 실시하며 선거운동은 하지 않는다.
- ③ 결선투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투표 시간에 준하여 이를 동안 진행하고, 투표율에 상관없이 더 많은 사람이 투표한 선거운동본부가 당선된다. 단, 개표의 결과 해당 두 선거운동본부 간 표 차보다 오차가 클 시 결선투표를 반복한다.

제85조(재투표)

- ① 단일 선거운동본부가 출마한 선거의 경우, 개표의 결과 찬성표와 반대표 간 표 차보다 오차가 클 시 재투표를 실시한다.
- ② 재투표는 개표 후 7일 이내에 실시하며 선거운동은 하지 않는다.
- ③ 재투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투표 시간에 준하여 이를 동안 진행하고, 선거운동본부는 투표율에 상관없이 찬성표가 투표수의 과반일 경우 당선된다. 단, 개표의 결과 찬성표와 반대표 간 표 차보다 오차가 클 시 재투표를 반복한다.

제11장 당선공고와 이의제기

제86조(당선공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 종료 후 24시간 이내로 당선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87조(이의제기)

- ① 각 후보자 및 선거운동본부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개표 종료 후 48시간 이내로 당선 선거운동본부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 ② 각 후보자 및 선거운동본부장이 이의제기를 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③ 각 후보자 및 선거운동본부장이 제2항을 위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경고 조치할 수 있다.
-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기된 이의를 책임 있게 논의하여야 한다.

제12장 선거 부정

제88조(선거 부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거 부정이라 한다.

- 1. 누군가 투표 방해와 대리 투표, 그 밖의 투표 과정에 개입하여 조작한 경우
- 2. 누군가 개표의 결과를 조작한 경우
- 3. 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유권자에게 투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의 금품을 제공한 경우
- 4. 그 밖의 위에 준하는 중대한 부정이 발견된 경우

제89조(선거 부정의 판단)

-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 제기 기간 중 선거 부정으로 의심되는 행위를 발견한 경우 24시간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
-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의 경우 24시간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 선거 부정에 관한 안건에 대해 논의하여야 한다.
-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부정을 결정하기 이전에 의심되는 사건의 경위를 명백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부정에 관한 안건을 책임 있게 논의하여야 하며 모든 경

과를 본회 회원과 각 선거운동본부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부정에 관한 안건을 논의할 시, 해당 선거운동본부의 선거운동본부장을 배석하여 해명 기회를 충분히 주어야 한다.

제13장 당선무효

제90조(당선무효)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논의를 거쳐 선거운동본부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

1. 제88조에 따라 선거운동본부의 당선 이후 선거 부정이 발견된 경우
2. 제96조에 따라 선거운동본부의 자격이 박탈된 경우
3. 당선 선거운동본부가 당선을 포기한 경우

②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논의한다.

제91조(당선무효의 공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무효의 결정 이후 24시간 이내에 시기와 사유를 본회의 회원들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장 재투표

제92조(재투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투표를 실시한다.

1. 오차율이 5% 이상인 때
2. 최다 득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제15장 보궐선거 및 재선거

제93조(보궐선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단, 제3호의 경우 사건에 대한 조사와 처리를 완료한 이후에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총투표 이후 공석 혹은 비상대책위원회로 존재할 경우
2. 연장 투표 후에도 투표율이 40%를 넘지 아니한 때
3. 당선된 단일 선거운동본부의 당선무효 및 당선포기 하였을 때

제94조(재선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선거를 실시한다. 단, 제1호의 경우 사건에 대한 조사와 처리를 완료한 이후에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선거에 부정이 발견된 때
2. 제95조(선거운동본부·후보자의 자격 박탈)에 따라 선거운동본부 자격 박탈로 인해 등록된 선거운동본부가 없을 경우

제16장 투표의 종료

제95조(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산)

-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제반 업무를 마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산한다.
 - 1. 선거운동본부의 당선을 확정하여 공고하는 경우
 - 2. 당선된 선거운동본부가 없음을 공고하는 경우
-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산으로 선거는 종료된다.

제17장 징계

제96조(선거운동본부후보자의 자격 박탈) 중앙운영위원회는 선거운동본부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를 거쳐 선거운동본부 후보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 1. 선거운동본부가 3회의 경고 조치를 받은 경우
- 2. 선거운동본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치에 의도적으로 불응하거나 지적사항을 개선하지 아니할 경우

제97조(제재 조치)

-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본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거운동본부에 경고 조치할 수 있다.
 - 1. 본 세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사항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 3. 그 밖에 선거에 위해한 행위를 저지른 경우
- ② 선거운동본부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동시다발적이거나 연속적으로 저지른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건의 발생으로부터 48시간 이후에 접수한 사안은 경고를 포함한 징계로 한다.
 -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초로 접수한 A 사안에 대해 접수로부터 48시간 이내에 또는 제재를 조치하지 전까지 추가로 접수한 동일한 사안은 A 사안과 하나의 사안으로 한다.
 -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A 사안에 대해 조치한 이후 발생한 동일한 사안을 접수할 경우 이는 A 사안과 별개의 사안으로 한다. 단, 제2호를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본부가 3회 경고 조치 받은 경우 후보자의 자격을 박탈한다.
- ④ 경고 조치 받은 선거운동본부의 후보자는 이후 진행되는 유세에서 경고 사유에 대한 발언 및 사과 발언을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제18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재정

제98조(회계기간) 선거의 회계기간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일로부터 선거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99조(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재원) 제16조 제4항에 의거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재원은 총학생회비로 운용한다.

제100조(선거지원금)

-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지원금의 액수를 책정한 이후 48시간 이내에 각 선거운동본부에 통보한다.
- ② 각 선거운동본부는 제50조 제3항에 의거하여 선거지원금에 대한 결산을 증빙서류와 함께 공개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또한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각 선거운동본부가 결산안을 마감시한까지 공개 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본부에 경고 조치할 수 있다.
- ④ 선거운동본부의 결산안의 증빙자료가 부족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경고 조치할 수 있다.
- ⑤ 지원금 지급은 매년 11월 총선거에 한정한다.

제101조(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산)

-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예산을 편성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 공고로부터 입후보자 등록 마감일 3일 이전까지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중앙운영위원회는 선거의 예산을 심의 후 의결한다.
- ③ 예산의 편성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을 수정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회에 즉시 보고하고 이를 결산에 반영하고 표시하여야 한다.

제102조(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산)

-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종료일 이후 7일 이내에 결산을 본회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종료일 이후 7일 이내에 각 항목별로 결산 내역의 증빙자료를 정리하여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03조(세칙의 제·개정)

- ① 중앙운영위원회는 본 세칙을 제·개정하여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보고 및 본회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② 본 세칙 내 기재되지 않은 사항 및 수정되어야 할 사항이 발생할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사항을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해당 사항에 대한 판단은 개정 이전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을 따른다.
- ③ 본 세칙의 해석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후보자 및 선거운동본부장의 협의하에 해석을 확정한다.

제19장 유세 선전물에 대한 규칙

제104조(유세 선전물에 대한 규칙) 유세 선전물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본 세칙에 부수되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유세 선전물에 관한 규칙이라 한다.

제105조(종류) 유세 선전물의 종류는 포스터, 리플릿, 피켓, 현수막, 입간판, 선거운동본부띠로 한정한다.

제106조(제재)

-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본부의 유세 선전물이 본 규칙에 위배될 경우, 선거운동본부의 유세 선전물의 제거를 명령하고 경고 조치할 수 있다.
- ② 경고 조치가 과하다고 판단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권고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선거운동본부는 즉시 권고 사항을 이행한다.

- ③ 모든 유세 선전물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위치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부착 후 설치 가능하다.
- ④ 유세 선전물 부착을 위해 각 선거운동본부는 후보자 등록기간에 해당 선전물을 제출해야 하며, 유세 선전물 부착 시 확인을 위해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본부원이 동행해야 한다.

제107조(포스터)

- ① 포스터의 크기는 A3(420*297mm)로 한다.
- ② 포스터는 컬러로 인쇄 가능하며, 총천연색 4도 이하로 한다.
- ③ 포스터의 용지는 스노우지로 하며, 중량은 150g으로 한다.
- ④ 포스터의 개수는 각 선거운동본부 당 60장으로 제한한다.
- ⑤ 포스터에는 후보자의 성명, 소속 및 학년(학번), 선거운동본부의 명칭이 필수로 포함되어야 한다.
- ⑥ 포스터에는 사진을 부착할 수 있다.
- ⑦ 포스터에는 타 선거운동본부를 비방하는 내용, 선정적인 문구를 기재할 수 없다.

제108조(리플릿)

- ① 리플릿의 크기는 펼쳤을 때, A4(210*297mm)로 한다.
- ② 리플릿은 컬러로 인쇄 가능하다.
- ③ 리플릿의 용지는 스노우지로 하며, 중량은 150g으로 한다.
- ④ 리플릿의 개수는 각 선거운동본부 당 1000장으로 제한한다.
- ⑤ 리플릿에는 후보자의 성명, 소속 및 학년(학번), 선거운동본부의 명칭이 필수로 포함되어야 한다.
- ⑥ 리플릿에는 사진을 부착할 수 있다.
- ⑦ 리플릿에는 타 선거운동본부를 비방하는 내용, 선정적인 문구를 기재할 수 없다.

제109조(현수막)

- ① 현수막의 크기는 600*90cm로 한다.
- ② 현수막은 컬러로 인쇄 가능하며, 총천연색 4도 이하로 한다.
- ③ 현수막의 개수는 각 선거운동본부당 6개로 제한한다.
- ④ 현수막에는 후보자의 성명, 소속 및 학년(학번), 선거운동본부의 명칭이 필수로 포함되어야 한다.
- ⑤ 현수막에는 사진을 부착할 수 있다.
- ⑥ 현수막에는 타 선거운동본부를 비방하는 내용, 선정적인 문구를 기재할 수 없다.

제110조(피켓)

- ① 피켓의 크기는 4:6 판 계열 4절(545*394mm) 이하로 한다.
- ② 피켓의 재질은 우드락으로 한다.
- ③ 피켓의 수량은 각 선거운동본부당 10개 이하로 제한한다.
- ④ 피켓에는 타 선거운동본부를 비방하는 내용, 선정적인 문구를 기재할 수 없다.
- ⑤ 피켓에는 사진을 부착할 수 있다.
- ⑥ 피켓은 선거운동본부 인원이 항상 소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경고 조치한다.
- ⑦ 피켓은 우천 시 보호를 위해 투명한 비닐 소재로 포장할 수 있다.

제111조(입간판)

- ① 입간판의 크기는 1800*600mm로 한다.

- ② 입간판의 재질은 pet로 제한한다.
- ③ 입간판의 개수는 각 선거운동본부당 6개로 제한한다.
- ④ 입간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건물 내부에 설치하며 수통은 사용하지 않는다.
- ⑤ 입간판은 컬러로 인쇄 가능하며, 총천연색 4도 이하로 한다.
- ⑥ 입간판에는 후보자의 성명, 소속 및 학년(학번), 선거운동본부의 명칭이 필수로 포함되어야 한다.
- ⑦ 입간판에는 타 선거운동본부를 비방하는 내용, 선정적인 문구를 기재할 수 없다

제112조(선거운동본부띠)

- ① 선거운동본부 띠의 크기는 100*1800mm로 한다.
- ② 선거운동본부 띠의 색은 선거운동본부의 색으로만 인쇄 가능하다.
- ③ 선거운동본부 띠는 단면으로만 인쇄 가능하다.
- ④ 선거운동본부 띠의 재질은 현수막, 어깨띠 등의 재질로 제한한다.
- ⑤ 선거운동본부 띠의 후가공은 벨크로, 옷핀 2종류로 제한한다.
- ⑥ 선거운동본부 띠에는 사진을 부착할 수 있다.
- ⑦ 선거운동본부 띠에는 선거운동본부의 기호를 필수로 기입한다.
- ⑧ 선거운동본부 띠의 끝 모양은 나비 모양과 일자 모양 2종류로 제한한다.
- ⑨ 선거운동본부 띠에는 타 선거운동본부를 비방하는 내용, 선정적인 문구를 기재할 수 없다.